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51호

2025년 글로벌 디자인 협업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과제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5년 글로벌 디자인 협업기업 디자인 혁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세계적 수준의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한 지역 우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 (지원규모) 3개 과제 이내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지원조건) 최종 소비자(End User)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서비스 산업
 - 지원금액의 30% 이상 수요기업 자부담 필수
 - (자부담 중 현금 50% 이상 편성)

- (지원내용) 세계적 디자이너와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혁신 디자인 개선

지원내용	세부설명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세계적 디자이너 총괄 컨설팅 진행, 디자인 기획 및 개발을 통해 부산 기업의 혁신 디자인 지원

- (신청기간) 공고 게시일 ~ 5월 7일(수), 14:00

- (사업추진일정)



※ 사업 진행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 본사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¹⁾·중견²⁾기업
- 사업자등록 기준 2022년 이전(업력 3년 초과) 매출 발생기업 대상
- 신청자격 ①, ②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기업

①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서비스업 20억원)인 기업

② 전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미만(서비스업 20억원 미만)인 기업은
성장·고용지표 중 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성장지표 (1개 이상 부합)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1%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 이상
고용지표 (1개 이상 부합)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70% 이상
	상시근로자 중 청년 비중 30% 이상

※ 신청자격은 25년도 부산 전략산업 선도기업 기준에 준함

※ 지표 계산 방법

- 매출액 증가율(CAGR) : 최근 3년('22~'24년)간 CAGR 값
: '22~'24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24년\ 매출액 / 2022년\ 매출액)^{(1/2)} - 1) \times 100$
-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 값
- 연구개발(R&D)투자비율(개별기준) : 최근 3년('22~'24년)간 R&D투자 비율의 평균 값
: $(\text{'22년 R\&D투자비율} + \text{'23년 R\&D투자비율} + \text{'24년 R\&D투자비율}) \times (1/3)$
- *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제시된 항목만 연구개발비로 인정
- 상시근로자 증가율(CAGR) : 최근 3년('22~'24년)간 CAGR 값
: '22~'24년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율 = $((2024년\ 상시근로자 / 2022년\ 상시근로자)^{(1/2)} - 1) \times 100$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견(후보)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조 및 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선정분야) 최종 소비자(End User)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서비스 산업
 - ※ 부품·소재 산업 → ‘완제품 제조업’ 으로 사업 다각화를 희망하는 경우 포함
 - ※ 개발 종료 시점에 완성된 시제품 또는 신상품 출시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선정평가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 서류 서면 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 진행

○ (평가일정)

- 발표평가 대상자 안내 : 2025. 5. 12.(월) 예정

- 발표평가 일정 : 2025. 5. 15.(목) 예정

- 최종선정 발표 : 개별 연락

※ 평가일정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100점

구분	평가항목	점수
기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 전문역량, 전담인력 ○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 매출 확대, 사업 확장을 위한 적극성 	25
사업화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디자인 개선을 통한 상품화 전략 및 활용 계획 ○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 및 우위 전략 	30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 타깃 고객의 명확성 ○ 글로벌 진출 및 시장 진입 전략 ○ 향후 매출 증대, 신 시장 개척 등 기대효과 	25
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투자금액 및 과제 준비 수준 ○ 사업 완료 후 양산 및 투자 계획 	20
합 계		100

- 우대점수 : 가점 5점

가점항목	가점기준	가점	총 인정가점
수요기업부담금 비율 우대 가점 (수요기업 부담금 비율 30%를 기준으로 2% 이상 시 마다 0.5점을 부여하여, 50%까지 최대 5점의 가산점 부여)	32% 이상	0.5	5
	34% 이상	1.0	
	36% 이상	1.5	
	38% 이상	2.0	
	40% 이상	2.5	
	42% 이상	3.0	
	44% 이상	3.5	
	46% 이상	4.0	
	48% 이상	4.5	
50% 이상	5.0		
합 계			5

○ (선정기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 평가위원 중 최고점수(1인) 및 최저점수(1인)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점수 확정

※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100점에서 평가점수 60점 미만 탈락

○ (추진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부산디자인진흥원	'25.4.9.~5.7.
▼		
과제신청	참여 기업 → 부산디자인진흥원	'25.4.9.~5.7.
▼		
서류 검토 및 평가	부산디자인진흥원	'25.5월 중
▼		
대상자 발표	평가위원회	'25.5월 중
▼		
발표평가	부산디자인진흥원	'25.5월 중
▼		
수혜기업 최종확정	부산디자인진흥원 ↔ 선정 기업	'25.5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고 또는 개별 안내 시
 일정 필히 확인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5월 7일(수), 14:00까지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주요내용	비고
1	[서식1] 과제 신청서 1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2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3	[서식3] 기업 부담금 지급 약속서	-	필수
4	[서식4] 정부사업 참여 이력	-	필수
5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6	최근 3년 표준제무제표증명원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	필수
7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① 국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② 지방세 : 정부24 발급	필수
8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분	필수
9	공정거래 위반 사실 확인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각1부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 - 위반유형 2가지 법에 대해 각각 신청 ①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접속 ②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관공서 제출용) ③ 요청부서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부산 경남 ④ 조회기간 : 2023.01.01. ~ 발행일	필수
10	최근 3년 기타원가명세서 각 1부	※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해당시
11	최근 3년 무형자산명세서 각 1부	※ 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원본대조필 날인	해당시
12	최근 3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각 1부	※ 고용지표 증빙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①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만 제출(연도별 1부, 총3부) ② 상시종업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해당시

13	수출액 관련(직수출, 기타수출) 관련 각1부	※ 수출액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기타수출 실적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유티레이드허브 내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 연도별 기준 환율	해당시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2022년</td> <td>2023년</td> <td>2024년</td> </tr> <tr> <td>원/달러 기준환율</td> <td>1291.95</td> <td>1305.41</td> <td>1363.98</td> </tr> </table>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원/달러 기준환율	1291.95	1305.41	1363.98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원/달러 기준환율	1291.95	1305.41	1363.98								
14	최근 3년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기타 증빙	최근3년 내 발급받은 인증 및 지식재산권 사본 제출	해당시								
15	[서식5] 성장지표 비율 확인서	※ 성장지표 증빙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해당시								
16	[서식6] 고용지표 비율 확인서	※ 고용지표 증빙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해당시								

* 파일명 예시 : (디자인혁신지원)회사명_참가신청서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사업별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 (제출방법)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처: designbm@dcb.or.kr

○ (문의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 ☎ 051-790-1071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07호

5. 기타사항 및 의무사항

○ (기타사항)

- 사업 완료 후 상품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일 것

- 상품 개발·개선 및 기업혁신(매출증대, 신상품 출시,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이 가능한 과제일 것

- 모든 사업 수행과정 현장점검 및 중간·최종보고 결과 사업 이행을 미비 또는 목표성과 달성 불가 판단 시, 기 지급 지원비 회수 또는 지원비 미지급할 수 있음
- 공모 심사 결과 적격한 지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은 재공고 또는 미 선정 처리 가능
-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시 선정평가는 재공고 또는 추가모집 완료 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항목·절차 등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생기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지원자(사)에게 있음
- 본 사업에 신청한 과제는 참여기업 및 참여 인력에 의해 수행된 적이 없어야 하며,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의무사항)

- 선정자는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수시 및 최종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 최종 평가 시 실물 목업(Mockup) 및 포트폴리오용 고화질 이미지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 과제 수행 시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법률 자문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필수로 등록해야 함
 - 지원 금액의 30% 이상 수요기업이 필수로 부담해야 함(자부담 금액 중 현금 50%이상 편성)

【붙임】

- [서식1]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 기업부담금 지급 협약서 1부.
- [서식4]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
- [서식5] 성장지표 비율 확인서 1부.
- [서식6] 고용지표 비율 확인서 1부. 끝.